

- 3) 질병사망 및 질병 80%이상 후유장해 :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 또는 80%이상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.
- 4) 배상책임손해(자기부담금 1만원) :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(1만원)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.
- 5) 휴대품손해(분실제외, 자기부담금 1만원, 보상한도 개당20만원 (단, 이동통신단말기 10만원)) :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(1만원)을 공제한 후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.
단, 1개 또는 1조, 1쌍에 대해 지급할 보험금은 20만원(단, 이동통신단말기(공단말기 포함)에 대해서는 10만원)을 한도로 합니다.
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.
- 6)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: 실제로 부담한 아래의 비용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. (자기부담금 : 사고(질병)당 10만원 공제후 20%)
 - 수색구조비용 :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, 구조 또는 이송하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
 - 항공운임등 교통비 : 2인 한도로 왕복교통비
 - 숙박비 : 구조자의 숙박비로 2인분 한도로 1인당 14박 한도
 - 이송비용 :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유해 이송비용
 - 제작비 : 10만원 한도
- 7) 항공기납치 :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기간동안에 대해 매일 7만원씩 20일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8)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: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여행중단 사유발생 이전에 기 지급한 귀국 항공, 선박 운임비용 및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(단, 숙박비는 2박 이내)을 보상합니다.
- 9)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
: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추가로 지출한 식비, 숙박비 필요한 경우 숙박비,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을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.
- 10) 아파트내 가재 화재손해 및 도난손해
: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가로 결정하며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. (도난손해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 공제)
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: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.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.
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 해당액보다 작을 때 :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의 } 80\% \text{ 해당액}}$$

③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

